

#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1. 12. 9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1년 11월 15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1년 11월 19일

라. 상정일자: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11. 23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(단위:천원)

안전 번호	사 업 명	사 업 내 용	출연금액
계			6,148,619
	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	인재육성 장학사업	535,619
	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	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등	5,613,000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옥연)

#### ○ 본 동의안은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과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 18조제3항에 따라 2022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,
- 먼저 본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면,  
영등포구 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재단으로서 장학기금 조성이 당면 현안 사항으로 보이며, 지속적인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장학사업비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영등포문화재단은 구립 도서관 및 마을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영등포 지역 독서문화를 진흥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창의·감성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주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# ○ 검토 결과

-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·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.
- 따라서, 미래교육과 소관의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,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,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

의안 번호	41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1.  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 이유

“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”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가. 출연대상 : (재)영등포구장학재단

나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(재산의 조성) 및 제16조(재정지원)

다. 사업내용

-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발굴·육성과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지원

라. 출연 필요성

- 2015년 4월에 구 출연금(5억)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은 기부 수입으로 기본 재산을 증자하고 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나
- 현재의 재원만으로는 운용소득(이자수익)이 적어 인재 발굴 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힘든 학생의 면학을 장려하는데 어려움이 있음
- 따라서, 구 예산을 출연함으로써 영등포구장학재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영등포구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

마.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(소요예산)

- 범 위 : 기본재산적립, 인재육성 장학금, 인건비, 운영비
- 출연금액 : 535,619천원

※ 2022년도 장학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2022 회계연도 세입·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

### 3. 참고사항

○ 관련규정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(재산의 조성) 및 제16조(재정지원)

## 참 고 사 항

### 가. 지방재정법

####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 나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#### 제20조(재정 지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다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

#### 제6조(재산의 조성)

-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 1. 구의 출연금
  2.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
  3. 그 밖의 수입금
- ② 재단의 시설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구의 출연금
2.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3.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

#### 제16조(재정지원)

구청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#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(미래교육과)

의안 번호	41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1.
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 이유

“2022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”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 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2. 주요 내용

가. 출연대상 : (재)영등포문화재단

나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운영 및 관리)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·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사업의 추진 등) 및 제6조(사업의 지원)

다. 사업내용

- 구립도서관 및 마을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
-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사업
- 창의예술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

라. 출연 필요성

- 구립도서관 및 마을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영등포구 지역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
- 아동·청소년이 갖추어야 할 미래 핵심역량인 창의·감성교육을 위한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로 운영의 전문성 및 공공성 확보

마. 출연금의 범위 및 내용(소요예산)

- 범 위

- 구립도서관 3개소 및 마을도서관 3개소 사업비, 인건비, 운영비 등
  - 구립도서관: 대림·문래·선유도서관
  - 마을도서관: 여의샛강마을도서관·신길밤동산·대림1동 마을도서관
- 그 외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
- 창의예술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비, 인건비, 사업비 등
- 출연금액
  -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: 5,023,363천원
  - 창의예술교육센터: 589,637천원

※ 2022년도 영등포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2022 회계연도 세입·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확정

### 3. 참고사항

- 관련규정
  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  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  -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기본재산의 조정)
  -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(운영재원 등)
  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운영 및 관리)
  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·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사업의 추진 등) 및 제6조(사업의 지원)

## 참 고 사 항

### 가. 지방재정법

####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 나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#### 제20조(재정 지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다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## 제5조(운영 및 관리)

-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과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면 도서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라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창의·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사업의 추진 등)  
및 제6조(사업의 지원)

제5조(사업의 추진 등)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의·인성교육 지원

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 
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 
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,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